

EPC의 業務概要

— EPO도 開設 끝내 —

昨年 10月 7日에 發効하고 11월 1일에 유럽特許廳(European Patent Office)을 開設하여 오는 6월 1일에는 出願業務를 開始하게 된 유럽特許協約(European Patent Convention)은 모든準備를 完了하였다.

EPO는 뮌헨에 개설했고 支廳(branch)은 헤이그에 設置했다. 헤이그의 지청에서는 特許出願의 方式審查를 하며 출원에 대한 調査를 한다. 出願自體와 調査報告를 公開하게 되는데 公用語는 英·佛·西獨語이다.

EPO는 受理課, 調査部, 審査部, 異議部, 法律部, 審判部, 抗告審判部로 나뉜다.

조사부는 헤이그의 지청안에 두되 베를린에 支所가 설치되면 지소에도 調査機構가 두어지고 또한 締約國에게도 調査業務를 委託할 豫定이다.

그리고 공용어가 아닌 言語에 의한 文獻의 조사는 로마에 설치되는 지소에서 取扱하되 체약국에게도 위탁하게 된다.

1. 特許出願業務

特許出願節次는 單一出願, 單一審査로서 特허를 許與하되 절차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出願書類의 뮌헨과 헤이그의 締約國內官署에의 提出
- ② 國內官署에 출원된 서류의 헤이그에의 移送
- ③ 수리과의 심사로서 出願日을 賦與
- ④ 出願, 審査料金의 點檢, 翻譯文提出 有無의 檢査
- ⑤ 수리과의 責任아래 이루어지는 方式審査
- ⑥ 방식심사와 併行해서 이루어지는 調査報告書作成과 그 字本의 出願人에의 發送

- ⑦ 출원과 조사보고의 公개
- ⑧ 實體審査
- ⑨ 유럽特許의 許與
- ⑩ 出願明細書의 公表
- ⑪ 특허에 대한 이의의 通知
- ⑫ 이의부에 의한 심사(이의부에서의 심사결과로 특허의 存續이나 取消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리과와 各部의 결정에 대하여는 심판부에 審判申請을 할 수 있다.)

한편 유럽특허는 許與公布日부터 各指定國의 國內特許가 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提起되었을 때에는例外이다.

2. 出願과 審査

① 出願處

출원은 뮌헨의 EPO 헤이그지청, 체약국의 國內法이 許容하는 바에 따른 그 國내관서에 제출하는 출원은 直接 또는 郵便으로 제출하게 된다. 國內官署는 가장 짧은 期間內에 제출된 출원서류를 EPO에 제출해야하며 대체로 6週間으로 되어 있으나 4個月를 延長할 수가 있다. 또한 優先權이 主張되었을 경우에는 優先日로부터 14개월 이내이다.

정해진 기간 후에 接受된 출원은 그것이 출원 제출 후 또는 우선일 후 14개월의 滿了前에 뮌헨이나 헤이그에서 수리된 때에는 절차를 進行시켜야 한다.

만약 14개월 후에 수리된 출원은 取下한 것으로 看做한다. 이 때의 출원인이 納入한 料金은 모두 返拂되어 國내출원으로 變更된다.

② 出願資格者

유럽출원은 모든 自然人, 法人, 行政法人을 規制

一本廳은 뤼헨에, 헤이그에는 支廳을 受理課·調查部등 7部署두어—

하는 法律에 따라 범인과 비슷한 모든 團體에 의해 출원된다.

출원은 單獨 또는 共同으로 할 수 있으며 2人以上的 출원인이 서로 다른 나라를 지정할 수도 있다. 출원인 이외의 者에게 유럽특허를 허여될 수 있다고 判決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는 當該出願을 自己出願으로서 절차를 추진할 수가 있다.

③ 出願後의 審査

受理課는 접수된 출원이 출원일을 결정하기 위한 最少要件이 갖추어 졌는가를 심사한다. 이를 方法審査라고 하며 최소요건이란 출원서류에는 다음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유럽특허를 요구하는趣旨의 表示
- (2) 1締約國 以上의 지정
- (3) 出願人關係情報
- (4) 發明의 說明과 1 이상의 請求範圍

EPO에서 작성한 樣式에는 上記(1)의 사항이 印刷되어 있으며 양식에 체약국의 1개국 이상을 記載하고 출원인의 姓名, 住所가 표시되면 (1)~(3)의 요건은 充足되는 셈이다. (4)의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는 初期에 있어서는 그 사실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만약 瑕疵가 존재하면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하자의 是正期間은 通知日로부터 1개월동안이다.

하자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출원은 EPC 출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통지된다.

따라서 출원인은 위의 요건이 갖추어진 날이 되므로 結局은 출원수리일이나 하자등 시정한 날이 출원일이 된다.

출원인에게는 출원일이 통지되며 圖面이 출원 일보다 뒤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출원일이 변경



되기도 한다.

출원일 이 정해진 출원에 대해서는 수리과에서 다음 사항을 點檢한다.

- (1) 出願料金과 調査料金의 期間內納入
- (2) 協約14條 2에 규정된 鑄譯

(1)의 기간은 출원서류가 최초로 접수된 날을 말하여 출원서류제출일부터 計算하므로 출원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원서류제출일과 출원일은 同一하다.

출원료금과 조사료금은 출원서류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요금이 납입되지 않으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3. 方式要件審査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때의 출원은 수리과에서 방식심사를 해야 한다. 同時に 出願寫本은 調査部에 送り되어 調査報告書가 작성된다. 작성된 보고서는 수리과에서 출원인에게 發送된다.

이 경우 보고서에 引用된 文書의 사본과 조사부가 결정한 確定要約寫本도 보고서와 함께 출원인에게 발송한다.